

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년 2월 13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월 23일, 김용술 의원
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23일
다. 상정일자 :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5년 2월 13일)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('24.11.1. 시행)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 개정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」로 제명을 변경
- 2)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3) 구청장의 책무, 추진계획의 수립(안 제4조, 안 제5조)
- 4) 노인생산물품 우선구매 등, 보험가입 및 예산지원 등(안 제6조~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관련 조항을 내실화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

2) 주요 내용

- 가)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」로 제명을 변경
 -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(' 24.11.1. 시행)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제명을 변경함

나)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
-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

다) 구청장의 책무, 추진계획의 수립(안 제4조, 안 제5조)

-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·보급하고,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정책의 추진을 책무로 규정하고,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

라)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, 보험가입 및 예산지원 등(안 제6조~안 제8조)

- 법 제18조에 따라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의 안전 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규정함

3) 검토 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